

VI

부 록

1. 장애인 복지·교육 영역 지표별 원점수
2. 2023년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 설명 자료

부록 1.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별 원점수

1. 교육 영역

지표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시·도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대상자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산식 (단위)	A01 (천원)	A02 (명)	=A101/A02 (천원)	A03 (천원)	=A01/A03*100 (%)
서울	540,432	13,888	39	12,891,521	4.19
부산	215,670	7,135	30	5,751,288	3.75
대구	168,881	5,518	31	4,392,236	3.84
인천	197,614	7,648	26	5,393,503	3.66
광주	114,652	3,386	34	3,132,347	3.66
대전	128,174	3,541	36	3,073,565	4.17
울산	95,791	2,910	33	2,394,519	4.00
세종	44,727	1,025	44	1,061,528	4.21
경기	680,387	26,963	25	22,334,511	3.05
강원	142,816	3,134	46	4,394,620	3.25
충북	143,649	4,690	31	4,394,620	3.27
충남	244,366	5,583	44	5,590,073	4.37
전북	186,486	4,273	44	4,901,772	3.80
전남	132,625	4,336	31	5,007,700	2.65
경북	207,981	5,878	35	5,992,898	3.47
경남	309,495	7,734	40	7,186,591	4.31
제주	65,994	2,061	32	1,601,543	4.12

지표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법정정원 충원율		
	특수학급 수	일반학교 전체 학급수	특수학급 설치율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수	법정 정원 충원률
산식 (단위)	A04(개)	A05(개)	=A04/A05*100(%)	A06(명)	A07(명)	=A06/A07*4*100(%)
서울	1,588	46,895	3.39	249	935	106.52
부산	640	15,214	4.21	109	693	62.91
대구	469	12,133	3.87	56	418	53.59
인천	793	15,188	5.22	121	613	78.96
광주	322	8,562	3.76	45	202	89.11
대전	390	8,264	4.72	79	320	98.75
울산	341	6,323	5.39	45	201	89.55
세종	153	3,254	4.70	50	189	105.82
경기	3,628	68,598	5.29	594	2,128	111.65
강원	407	8,332	4.88	43	175	98.29
충북	579	8,624	6.71	99	419	94.51
충남	818	12,416	6.59	121	482	100.41
전북	505	10,734	4.70	75	354	84.75
전남	728	10,765	6.76	75	252	119.05
경북	727	14,192	5.12	52	332	62.65
경남	1,034	18,845	5.49	104	439	94.76
제주	165	3,663	4.50	24	199	48.24

지표	특수교육 법정정원 충원율(계속)					
항목	초등특수 교육담당 교원수	초등 특수교육 대상자 수	법정 정원 충원률	중·고등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중·고등 특수교육 대상자 수	법정 정원 충원률
산식 (단위)	A08(개)	A09(개)	=A08/A09*6 *100(%)	A10(명)	A11(명)	=A10/A11*7 *100(%)
서울	1,308	6,443	121.81	1,469	5,893	174.50
부산	564	3,375	100.27	538	2,828	133.17
대구	457	2,487	110.25	547	2,176	175.97
인천	632	3,734	101.55	587	2,892	142.08
광주	297	1,546	115.27	374	1,474	177.61
대전	277	1,491	111.47	367	1,399	183.63
울산	246	1,306	113.02	286	1,164	171.99
세종	95	215	265.12	76	277	192.06
경기	2,478	13,214	112.52	2,707	10,763	176.06
강원	297	1,416	125.85	333	1,311	177.80
충북	457	2,084	131.57	445	1,860	167.47
충남	582	2,699	129.38	562	2,086	188.59
전북	365	1,978	110.72	411	1,672	172.07
전남	493	1,987	148.87	525	1,777	206.81
경북	525	2,688	117.19	571	2,329	171.62
경남	760	3,629	125.65	781	3,255	167.96
제주	165	995	99.50	165	760	151.97

지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항목	특수교육 대상자 수	보조인력 (유급+무급) 인원 수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수	보조인력 (유급) 인원 수	배치율
산식 (단위)	A12(명)	A13(명)	=A12/A13 *100(%)	A14(명)	A15(명)	=A14/A15 *100(%)
서울	2,356	13,845	17.02	1,416	13,845	10.23
부산	810	7,135	11.35	648	7,135	9.08
대구	825	5,512	14.97	562	5,512	10.20
인천	756	7,631	9.91	712	7,631	9.33
광주	433	3,386	12.79	397	3,386	11.72
대전	751	3,535	21.24	582	3,535	16.46
울산	662	2,906	22.78	343	2,906	11.80
세종	192	1,025	18.73	177	1,025	17.27
경기	2,666	26,884	9.92	1,144	26,884	4.26
강원	399	3,131	12.74	323	3,131	10.32
충북	469	4,780	9.81	419	4,780	8.77
충남	677	5,581	12.13	594	5,581	10.64
전북	524	4,273	12.26	414	4,273	9.69
전남	554	4,336	12.78	336	4,336	7.75
경북	820	5,848	14.02	504	5,848	8.62
경남	919	7,727	11.89	629	7,727	8.14
제주	245	1,974	12.41	205	1,974	10.39

지표	통합교육 학생비율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항목	특수 학급 학생 수	일반 학급 장애 학생 수	특수 교육 대상자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 학급 학생 수	특수 학교 학생 수	특수 학급 수	특수 학교 학급 수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개)	
산식 (단위)	A16 (명)	A17 (명)	A18 (명)	$=\frac{A16+A17}{A18} \times 100$ (%)	A19 (명)	A20 (명)	A21 (개)	A22 (명)	$=\frac{A21+A22}{A19+A20} \times 10$ (개)	A26 (%)
서울	7,167	2,195	13,888	67.41	7,167	4,483	1,588	856	2.10	2.20
부산	3,297	1,816	7,165	71.36	3,297	2,022	640	371	1.90	1.65
대구	2,205	1,399	5,518	65.31	2,205	1,908	469	334	1.95	1.80
인천	4,096	1,589	7,648	74.33	4,096	1,946	793	352	1.90	1.29
광주	1,582	634	3,386	65.45	1,582	1,170	322	228	2.00	1.89
대전	1,922	491	3,541	68.14	1,922	1,122	390	196	1.93	2.09
울산	1,621	510	2,910	73.23	1,621	775	341	151	2.05	1.80
세종	659	137	1,025	77.66	659	229	153	48	2.26	2.11
경기	17,535	3,930	26,963	79.61	17,535	5,419	3,628	953	2.00	1.18
강원	1,789	476	3,134	72.27	1,789	866	407	199	2.28	1.28
충북	2,584	812	4,690	72.41	2,584	1,384	579	289	2.19	1.36
충남	3,716	523	5,583	75.93	3,716	1,342	818	279	2.17	1.27
전북	2,220	934	4,273	73.81	2,220	1,119	505	216	2.16	1.51
전남	2,832	307	4,336	72.39	2,832	1,197	728	220	2.35	1.03
경북	3,159	1,188	5,878	73.95	3,159	1,501	727	254	2.11	0.98
경남	4,604	1,209	7,734	75.16	4,604	1,914	1,034	392	2.19	1.62
제주	1,005	424	2,061	69.34	1,005	545	165	105	1.74	1.41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지표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물품 구매액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산식 (단위)	B01(%)	B02(명)	B03(명)	B02/B03 *100(%)	B04(원)	B05(원)	=B04/B0 5*100(%)
서울	3.16	3,931	48,434	8.12	35,274,419,449	2,605,675,622,662	1.35
부산	4.29	807	15,614	5.17	3,700,703,022	619,927,366,426	0.60
대구	3.94	857	11,945	7.17	3,110,153,640	448,196,856,493	0.69
인천	3.98	624	14,491	4.31	10,812,676,827	796,483,085,677	1.36
광주	4.52	381	7,903	4.82	3,211,553,942	235,413,393,948	1.36
대전	3.65	345	7,237	4.77	1,680,140,900	300,609,554,178	0.56
울산	3.32	296	6,201	4.77	4,387,017,510	364,504,172,157	1.20
세종	3.28	92	2,024	4.55	601,454,336	143,690,211,340	0.42
경기	3.36	2,312	56,353	4.10	45,087,150,898	3,762,640,716,183	1.20
강원	4.21	725	17,979	4.03	6,392,555,770	1,310,711,500,911	0.49
충북	3.62	544	13,753	3.96	5,697,773,740	804,611,374,783	0.71
충남	3.55	689	18,008	3.83	19,078,000,017	1,352,096,884,516	1.41
전북	4.75	676	16,914	4.00	7,679,582,486	1,004,226,936,662	0.76
전남	3.46	755	21,876	3.45	6,805,339,371	1,634,281,634,310	0.42
경북	3.77	1,292	25,255	5.12	8,756,838,146	,921,944,586,152	0.46
경남	3.73	921	23,547	3.91	9,167,894,020	1,545,546,305,754	0.59
제주	3.97	239	5,253	4.55	3,767,181,710	332,632,458,154	1.13

지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 수당지급 총액	장애아동수당 전체지급대상자 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산식 (단위)	B06(원)	B07(명)	=B06/B07(원)
서울	1,897,986,220	25,404	74,712
부산	2,221,890,000	17,039	130,400
대구	1,684,449,830	29,928	56,283
인천	1,935,605,000	12,021	161,019
광주	1,323,779,680	9,412	140,648
대전	1,076,590,000	7,992	134,708
울산	679,190,000	4,085	166,264
세종	95,770,000	632	151,535
경기	3,966,441,454	37,965	104,476
강원	962,865,650	6,821	141,162
충북	1,067,860,660	9,912	107,734
충남	1,813,908,600	9,005	201,433
전북	1,814,440,000	12,795	141,809
전남	1,460,496,000	10,572	138,148
경북	1,335,446,560	17,789	75,071
경남	1,913,820,000	10,863	176,178
제주	616,980,000	1,377	448,061

지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연금 지급액		
항목	장애수당 지급 총액	장애 수당 전체 지급 대상자수	1인당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연금 지급 총액	장애 연금 전체 지급 대상자수	1인당 장애 연금 지급액
산식 (단위)	B08(원)	B09(명)	=B08/ B09(원)	B10(원)	B11(명)	=B10/ B11(원)
서울	54,848,056,670	735,336	74,589	107,997,808,970	600,600	179,817
부산	28,672,573,340	523,234	54,799	92,201,898,520	308,526	298,846
대구	19,776,478,510	575,328	34,374	64,697,055,410	296,352	218,312
인천	18,322,965,430	277,573	66,011	66,100,011,500	225,884	292,628
광주	9,027,850,320	148,684	60,718	40,308,328,380	124,301	324,280
대전	8,490,780,000	139,224	60,986	38,671,317,240	126,852	304,854
울산	4,265,690,000	72,371	58,942	21,797,904,050	76,497	284,951
세종	838,300,000	14,403	58,203	4,818,815,510	17,154	280,915
경기	70,482,474,060	797,764	88,350	243,840,611,360	854,023	285,520
강원	11,833,451,540	199,515	59,311	46,744,356,170	165,089	283,146
충북	8,220,450,340	173,652	47,339	15,329,109,000	177,060	86,576
충남	16,766,739,400	205,741	81,494	68,265,944,000	221,623	308,027
전북	19,443,316,000	292,543	66,463	71,892,616,000	232,778	308,846
전남	17,487,997,830	287,724	60,780	70,882,294,130	256,932	275,880
경북	20,175,378,016	380,472	53,027	69,608,752,126	282,883	246,069
경남	20,290,180,000	355,524	57,071	91,961,919,140	336,816	273,033
제주	3,457,680,000	22,161	156,025	17,333,168,400	60,455	286,712

지표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비율		
항목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건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비율
산식 (단위)	B12(건)	B13(명)	B12/B13*100(%)
서울	13	99,108	0.013
부산	4	54,962	0.007
대구	2	38,655	0.005
인천	2	44,706	0.004
광주	2	22,676	0.009
대전	1	20,082	0.005
울산	-	11,234	0.000
세종	-	1,156	0.000
경기	8	127,609	0.006
강원	1	27,763	0.004
충북	1	29,149	0.003
충남	5	31,145	0.016
전북	1	41,602	0.002
전남	1	42,766	0.002
경북	1	47,623	0.002
경남	4	50,110	0.008
제주	-	8,881	0.000

지표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총액	18~55세 미만 중증등록장애 인 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18~55세미만 중증등록장애 인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비율
산식 (단위)	B14(원)	B15(명)	=B15/ B16(원)	B17(명)	B18(명)	=B17/B18 *100(%)
서울	50,009,346,910	50,290	994,419	4,126	50,290	8.20
부산	15,102,441,500	21,612	698,799	1,319	21,612	6.10
대구	14,217,443,000	17,034	834,651	1,194	17,034	7.01
인천	14,211,671,000	19,445	730,865	1,046	19,445	5.38
광주	13,752,835,005	11,282	1,219,007	425	11,282	3.77
대전	9,590,910,269	10,737	893,258	863	10,737	8.04
울산	4,278,275,000	4,153	1,030,165	325	4,153	7.83
세종	3,302,005,140	1,072	3,080,229	207	1,072	19.31
경기	97,922,611,000	79,628	1,229,751	4,689	79,628	5.89
강원	13,757,962,896	19,472	706,551	782	19,472	4.02
충북	16,331,000,000	13,559	1,204,440	934	13,559	6.89
충남	13,263,791,000	16,752	791,774	785	16,752	4.69
전북	10,481,810,000	15,606	671,653	674	15,606	4.32
전남	8,960,126,361	15,444	580,169	548	15,444	3.55
경북	24,984,905,000	21,129	1,182,493	1,265	21,129	5.99
경남	20,904,370,691	23,077	905,853	1,349	23,077	5.85
제주	10,551,335,000	3,934	2,682,088	400	3,934	10.17

3.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분석

지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의료비 예산 (국고 및 자체사업)	국민 기초 수급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장구 구입 비용 의료 급여 지급 건수	보조 기구 교부 건수	국민 기초 수급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보조 기구 교부 비율	보장구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예산	보조기기 교부예산	1인당보장구 의료 급여및 보조 기구 교부 예산
산식 (단위)	C01 (원)	C02(명)	=C01/C02(원)	C03(건)	C04(건)	C05(명)	=(C03+C04)/C05 *100(%)	C06 (원)	C07 (원)	=(C06+C07)/C05(원)
서울	4,653,208,000	89,846	51,791	617	543	89,846	1.29	440,500,000	341,351,300	8,702
부산	3,010,218,570	42,893	70,180	3,233	274	42,893	8.18	2,280,306,000	123,516,000	56,042
대구	4,241,629,620	33,074	128,247	3,074	231	33,074	9.99	2,077,861,000	100,574,200	65,865
인천	3,078,992,600	35,184	87,511	2,454	262	35,184	7.72	1,896,666,850	103,250,630	56,842
광주	3,456,301,770	18,331	188,550	1,043	130	18,331	6.40	808,542,000	83,498,000	48,663
대전	8,021,015,000	18,387	436,233	1,137	291	18,387	7.77	933,834,000	119,579,300	57,291
울산	893,248,000	9,779	91,343	407	92	9,779	5.10	26,922,000	52,658,000	8,138
세종	170,094,800	1,594	106,709	72	13	1,594	5.33	57,100,000	6,336,600	39,797
경기	5,984,839,000	100,122	59,775	5,639	653	100,122	6.28	4,590,316,570	503,683,000	50,878
강원	1,156,160,000	23,579	49,033	804	148	23,579	4.04	696,418,710	69,605,800	32,488
충북	1,116,286,000	22,916	48,712	793	267	22,916	4.63	668,750,000	92,016,820	33,198
충남	1,777,000,000	26,890	66,084	116	193	26,890	1.15	103,207,000	73,312,000	6,564
전북	12,122,350,000	35,248	343,916	2,167	245	35,248	6.84	1,813,676,400	152,295,000	55,775
전남	9,921,250,000	32,645	303,913	1,371	1,371	32,645	8.40	1,125,827,000	1,266,084,000	73,270
경북	4,130,658,000	36,032	114,639	1,954	538	36,032	6.92	1,542,015,580	103,624,000	45,672
경남	3,381,348,000	42,926	78,772	1,985	158	42,926	4.99	1,575,242,000	88,539,100	38,759
제주	688,912,610	7,542	91,343	290	221	7,542	6.78	275,894,000	62,208,700	44,829

지표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항목	일반 건강 검진 수검 인원	일반 건강 검진 대상자수	일반 건강 검진 수검 비율	여성 장애인 산모도우미 파견 총 일수	출산 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인원 수	지원 일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산총액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산식 (단위)	C11 (명)	C12 (명)	C11/C12 *100(%)	C13 (일)	C14 (명)	C13/C14(일)	C15 (원)	=C15/C14 (원)
서울	106,703	174,587	61.12	1,175	130	9.04	130,000,000	1,000,000
부산	47,660	77,956	61.14	448	48	9.33	49,000,000	1,020,833
대구	35,106	57,243	61.33	326	39	8.36	39,000,000	1,000,000
인천	43,742	67,085	65.20	532	52	10.23	52,000,000	1,000,000
광주	20,365	31,582	64.48	161	33	4.88	33,000,000	1,000,000
대전	21,798	32,656	66.75	464	42	11.05	42,000,000	1,000,000
울산	16,569	24,623	67.29	213	60	3.55	80,500,000	1,341,667
세종	3,867	5,652	68.42	107	9	11.89	15,500,000	1,722,222
경기	167,950	262,055	64.09	2,087	225	9.28	257,000,000	1,142,222
강원	28,111	44,915	62.59	208	36	5.78	36,000,000	1,000,000
충북	29,054	45,116	64.40	333	42	7.93	13,500,000	321,429
충남	38,690	61,747	62.66	587	46	12.76	46,000,000	1,000,000
전북	38,040	58,971	64.51	235	45	5.22	56,000,000	1,244,444
전남	40,713	63,898	63.72	262	41	6.39	35,000,000	853,659
경북	49,769	82,311	60.46	556	51	10.90	38,100,000	747,059
경남	54,407	86,517	62.89	419	49	8.55	50,000,000	1,020,408
제주	9613	16,419	58.55	90	18	5.00	9,000,000	500,000

지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항목	64세 이하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인원수 (실인원)	64세이하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총집행액	만6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등 록장애 인 수	64세이하 서비스 이용 비율 (%)	64세 이하 서비스 평균 급여량 (원)	65세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인원 수 (실인원)	65세이상 활동지원 서비스(급여) 총집행액	65세 이상 중증등 록장애 인 수	65세 이상 서비스 이용 비율 (%)	65세 이상 서비스 평균 급여량 (원)
산식 (단위)	C16(명)	C17(원)	C18 (명)	=C17/C18* 100 (%)	=C17 /C16 (원)	C19 (명)	C20(원)	C21B (명)	=C20 /C21* 100 (%)	=C19 /C20 (원)
서울	22,776	498,756,164,768	86,586	26.30	5,760,240	1,994	50,215,170,550	52,853	3.77	950,091
부산	9,521	223,032,618,793	39,224	24.27	5,686,126	714	18,000,801,360	26,619	2.68	676,239
대구	6,071	143,092,077,720	29,935	20.28	4,780,093	450	142,067,357,720	16,722	2.69	8,495,835
인천	6,102	171,964,575,700	33,701	18.11	5,102,655	543	15,605,860,300	20,087	2.70	776,913
광주	5,590	132,543,576,000	13,102	42.67	10,116,286	343	8,490,896,075	8,620	3.98	985,023
대전	4,493	105,054,293,800	18,782	23.92	5,593,350	270	6,367,841,720	9,300	2.90	684,714
울산	1,926	35,261,553,507	12,043	15.99	2,927,971	108	2,342,207,132	6,931	1.56	337,932
세종	837	13,494,237,038	3,215	26.03	4,197,274	16	289,373,810	1,648	0.97	175,591
경기	29,517	603,377,539,696	135,883	21.72	4,440,420	1,739	37,191,405,106	77,869	2.23	477,615
강원	2,910	59,987,704,400	21,369	13.62	2,807,230	260	5,774,029,860	15,879	1.64	363,627
충북	3,713	90,000,000,000	23,676	15.68	3,801,318	298	5,936,181,889	13,535	2.20	438,580
충남	7,788	120,920,625,273	29,624	26.29	4,081,847	865	13,435,625,031	19,047	4.54	705,393
전북	5,163	137,643,867,000	28,109	18.37	4,896,790	461	9,957,973,000	18,030	2.56	552,300
전남	6,261	117,291,317,571	29,438	21.27	3,984,351	466	8,991,474,982	19,375	2.41	464,076
경북	5,212	112,072,767,527	38,045	13.70	2,945,795	407	43,054,660,750	25,839	1.58	1,666,267
경남	9,291	174,683,388,230	41,958	22.14	4,163,292	552	10,378,347,900	25,220	2.19	411,513
제주	1,810	35,998,634,331	9,493	19.07	3,792,124	145	3,024,537,521	4,828	3.00	626,458

지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항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예산 총액	등록장애인 수	1인당 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예산액	장애인 주거 관련 지원사업 집행 예산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
산식 (단위)	C22(원)	C23(명)	=C22/C23(원)	C24(원)	C25(명)	=C24/C25(원)
서울	15,993,241,000	76,862	208,077	6,158,000,000	174,738	35,241
부산	4,137,640,000	34,988	118,259	228,000,000	76,832	2,968
대구	2,248,360,000	26,762	84,013	25,245,713,000	59,918	421,338
인천	1,286,787,000	29,713	43,307	342,000,000	72,708	4,704
광주	1,899,820,000	16,642	114,158	761,740,000	36,014	21,151
대전	790,094,000	16,394	48,194	11,400,000	36,213	315
울산	523,033,000	10,480	49,908	11,400,000	26,083	437
세종	318,151,839	1,521	209,173	41,800,000	6,906	6,053
경기	3,870,593,970	117,873	32,837	38,919,252,000	292,388	133,108
강원	360,322,510	19,472	18,505	252,211,000	42,788	5,894
충북	530,899,000	21,269	24,961	323,000,000	45,424	7,111
충남	897,560,000	26,453	33,930	665,871,000	59,123	11,262
전북	4,839,242,000	25,542	189,462	572,591,620	54,169	10,570
전남	643,222,000	26,044	24,698	916,394,000	54,830	16,713
경북	125,290,940	34,432	3,639	30,000,000	73,279	409
경남	1,016,912,990	37,334	27,238	78,090,000	87,274	895
제주	444,206,460	6,980	63,640	216,700,000	18,114	11,963

4.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지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충 수준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 복지관 수	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관 수	만18세이상 55세미만 중증 (장애정도가심한) 등록장애인 수	직업재활시설 수	만18세이상 55세미만 중증 (장애정도가심한) 등록장애인 5천명 당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수
산식 (단위)	D01(명)	D02(개)	=D02/D01*10,000(개)	D03(명)	D04(개)	=D04/D03*5,000(개)
서울	391,794	51	1.30	50,290	138	13.72
부산	175,467	32	1.82	21,612	47	10.87
대구	130,520	6	0.46	17,034	41	12.03
인천	152,226	10	0.66	19,445	39	10.03
광주	69,314	7	1.01	11,282	33	14.63
대전	71,440	8	1.12	10,737	34	15.83
울산	51,383	5	0.97	4,153	17	20.47
세종	12,944	1	0.77	1,072	8	37.31
경기	586,421	39	0.67	79,628	187	11.74
강원	100,520	11	1.09	19,472	40	10.27
충북	97,117	12	1.24	13,559	28	10.33
충남	134,004	17	1.27	16,752	23	6.86
전북	130,189	14	1.08	15,606	29	9.29
전남	136,472	18	1.32	15,444	22	7.12
경북	178,341	21	1.18	21,129	47	11.12
경남	188,825	18	0.95	23,077	62	13.43
제주	36,918	6	1.63	3,934	11	13.98

지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항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	장애인체육시설 수	장애인수련시설 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	수어통역센터 수	점자도서관 수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수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수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수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정신보건센터 수	지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수	기타 장애인 이용기관 수	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외 장애인 이용기관수
산식 (단위)	D05 (개)	D06 (개)	D07 (개)	D08 (개)	D09 (개)	D10 (개)	D11 (개)	D12 (개)	D13 (개)	D14 (개)	D15 (개)	D16 (개)	D17 (개)	D18 (개)	= (D05~D18의합)/D01*10,000 (개)
서울	135	7	1	1	26	9	-	-	6	60	1	1	1	-	6.33
부산	67	3	-	1	7	1	-	3	-	19	17	1	1	96	12.31
대구	53	2		2	6	3	1		1	7	10			1	6.59
인천	43	3	-	1	8	1	1	6	2	11	11	1	1	20	7.16
광주	39	7	-	1	-	1	-	-	-	10	6	4	1	14	11.97
대전	48	3	-	1	5	1	-	2	3	7	6	1	1	3	11.34
울산	42	2	-	1	1	1	1	-	-	6	-	2	-	47	20.05
세종	3	-	-	1	1	1	-	-	-	2	-	-	-	-	6.18
경기	158	4	-	31	32	5	-	-	1	60	1	1	-	20	5.34
강원	20	4	2	19	19	2	-	3	1	8	7	12	2	46	14.42
충북	26	1	-	11	12	1	-	-	1	9	15	-	-	11	8.96
충남	19	4	-	15	15	1	1	104	-	7	21	-	-	30	16.19
전북	35	5	-	15	15	1	1	13	1	8	15	4	2	28	10.98
전남	28	6	-	21	21	2	2	-	-	12	24	3	2	46	12.24
경북	43	6		23	22	1			1	4	26		1	5	7.40
경남	53	2	-	20	20	1	1	3	2	19	6	-	-	12	7.36
제주	31	1		1	1	1		11	1	2	3	1		12	17.61

지표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항목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수	등록장애인 1만명당 기타거주시설 수
산식 (단위)	D19(개)	D20(개)	=D19+D20/D1*10,000(개)
서울	40	164	5.21
부산	3	34	2.11
대구	2	30	2.45
인천	5	42	3.09
광주	4	51	7.93
대전	20	43	8.82
울산	7	10	3.31
세종	0	2	1.55
경기	28	150	3.04
강원	9	25	3.38
충북	6	46	5.35
충남	7	13	1.49
전북	2	21	1.77
전남	5	20	1.83
경북	11	19	1.68
경남	11	53	3.39
제주	7	19	7.04

지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항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체육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수련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수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수	점자도서관종사자 수	점자도서및녹음서출판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수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수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수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종사자 수	기타센터 종사자 수	등록장애인1만명당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수
산식(단위)	D21(명)	D22(명)	D23(명)	D24(명)	D25(명)	D26(명)	D27(명)	D28(명)	D29(명)	D30(명)	D31(명)	D32(명)	D33(명)	D34(명)	D35(명)	=(D21~D35의합)/D01*10,000(명)
서울	1,982	599	188	3	225	137	-	-	6,906	811	357	500	3	3	14	299.34
부산	441	245	79	-	20	37	10	10	16	-	7	413	4	164	454	108.28
대구	166	210	36	-	22	33	11	6		9	28	201	-	-	722	110.63
인천	311	548	60	-	23	34	9	9	34	164	44	296	3	3	82	106.42
광주	208	202	134	-	15	-	6	-			58	143	14	4	250	149.18
대전	307	166	45	-	12	31	5	-	69	309	69	128	3	3	14	162.51
울산	136	151	51	-	18	21	4	4	15	-	9	128	9	3	84	123.19
세종	33	26	-	-	8	7	5	-	-	-	5	-	-	-	-	64.89
경기	1,591	1,228	4			200	30		-	-	438	82	3	-	142	63.40
강원	235	118	8	9	76	90	8	-	7	216	23	57	27	9	114	99.18
충북	301	171	24	0	54	54	8	0	0	14	47	245	0	0	60	100.70
충남	430	77	10	-	84	77	4	1	-	-	28	267	-	-	121	82.01
전북	316	151	19	-	67	63	3	3	81	7	43	291	16	9	114	90.87
전남	437	151	6	-	87	85	5	9	-	-	48	218	9	7	134	87.64
경북	464	189	32		103	106	6		35	13		292	-	2	12	70.31
경남	388	211	28	-	53	74	6	2	-	136	79	44	-	-	26	55.45
제주	193	227	23		14	17	7		105	29	10	108	3	-	96	225.36

지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항목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이용자 10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산식 (단위)	D36(명)	D37(명)	=D36/D37*10(명)
서울	987	4,126	2.39
부산	262	1,319	1.99
대구	214	1,194	1.79
인천	278	1,046	2.66
광주	165	425	3.88
대전	203	863	2.35
울산	81	325	2.49
세종	53	207	2.56
경기	1,410	4,689	3.01
강원	217	782	2.77
충북	235	934	2.52
충남	190	785	2.42
전북	164	674	2.43
전남	137	548	2.50
경북	295	1,265	2.33
경남	335	1,349	2.48
제주	156	400	3.90

지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항목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영유아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거주 장애인 수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거주 장애인 수	거주 장애인 수 (합)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영유아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종사자 수	거주 시설종 사자수(합)	거주 장애인 10명당 종사자 수
산식 (단위)	D38 (명)	D39 (명)	D40 (명)	D41 (명)	D42 (명)	= D38-D 42의합 (명)	D43 (명)	D44 (명)	D45 (명)	D46 (명)	D47 (명)	= D43~ D47의 합 (명)	= D38-D 42의합/ D43 ~D47의 합*10 (명)
서울	623	1,036	75	382	245	2,361	718	1,156	65	405	597	2,941	8.03
부산	754	148	75	27	44	1,048	334	440	62	40	112	988	10.61
대구	461	355	34	12	42	904	676	477	45	22	120	1,340	6.75
인천	256	357	31	31	44	719	375	455	50	41	136	1,057	6.80
광주	472	136	-	38	107	753	510	157	-	58	198	923	8.16
대전	357	306	31	143	74	911	469	342	33	211	145	1,200	7.59
울산	59	363	-	78	10	510	65	447	-	94	37	643	7.93
세종	73	35	0	0	3	111	97	49	0	0	8	154	7.21
경기	1,757	1,767	51	215	253	4,043	2,468	2,103	63	234	596	5,464	7.40
강원	461	464	-	67	26	1,018	650	613	-	81	103	1,447	7.04
충북	482	485	-	54	57	1,078	786	676	-	80	172	1,714	6.29
충남	621	488	-	54	21	1,184	905	616	-	82	48	1,651	7.17
전북	800	326	27	17	23	1,193	1,055	368	32	24	79	1,558	7.66
전남	608	226	-	22	34	890	918	274	-	37	92	1,321	6.74
경북	739	1,003		121	22	1,885	1,044	1,235		150	68	2,497	7.55
경남	611	542	24	101	88	1,366	780	633	25	153	215	1,806	7.56
제주	269	270		60	21	620	309	286		64	67	726	8.54

지표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항목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수	전체 어린이집 수	장애아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산식 (단위)	D50 (개)	D51 (개)	D52 (개)	$= (D50 + D51) / D52 * 100(\%)$
서울	423	8	4,431	9.73
부산	66	15	1447	5.60
대구	10	17	1079	2.50
인천	109	7	1652	7.02
광주	11	11	878	2.51
대전	36	4	916	4.37
울산	18	9	612	4.41
세종	8	1	314	2.87
경기	546	20	8903	6.36
강원	24	4	847	3.31
충북	11	6	921	1.85
충남	35	11	1421	3.24
전북	10	10	944	2.12
전남	25	13	952	3.99
경북	20	14	1310	2.60
경남	44	19	1904	3.31
제주	68	4	423	17.02

5.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지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률					
	장애인 콜택시 수	장애인 전담임차택시 수	장애인, 비장애인 공용 임차택시 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수	장애인 콜택시 의무 대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비율
산식 (단위)	E01 (대)	E02 (대)	E03 (대)	E04 (대)	E05 (대)	(E01~E04의 합)/E05*100
서울	692	76	8,600	158	576	1,653.82
부산	208	-	1,000	15	211	579.62
대구	199	-	316	14	218	242.66
인천	215	-	-	14	255	89.80
광주	127	-	228	8	128	283.59
대전	101	90	160	8	134	267.91
울산	90	-	241	13	89.3	385.22
세종	29	-	-	3	22	145.45
경기	1,209	97	-	129	849	163.20
강원	218	-	21	36	195	141.03
충북	174	-	21	17	179	118.44
충남	204	-	-	49	236	107.20
전북	233	48	-	27	275	112.00
전남	207	-	14	51	241	112.86
경북	235	5	-	51	293	99.32
경남	391	-	-	20	344	119.48
제주	68	-	174	7	68	366.18

지표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저상버스 보급대 수	전체 등록 시내버스대수	저상버스 확보 비율	지자체 배리어프리인 증시설 개수	전체 지자체 기관 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배리 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산식 (단위)	E06 (대)	E07 (대)	=E06/E07*100(%)	E08(개)	E09(개)	=08/E09*100(%)
서울	4,858	7,385	65.78	372	476	78.15
부산	908	2,517	36.07	166	201	82.59
대구	728	1,566	46.49	198	198	100.00
인천	412	2,204	18.69	259	259	100.00
광주	394	999	39.44	103	103	100.00
대전	410	1,015	40.39	131	139	94.24
울산	127	917	13.85	70	70	100.00
세종	124	299	41.47	93	491	18.94
경기	3,509	10,538	33.30	905	1,270	71.26
강원	219	690	31.74	342	342	100.00
충북	219	857	25.55	219	285	76.84
충남	195	1,163	16.77	345	377	91.51
전북	261	673	38.78	286	624	45.83
전남	150	675	22.22	320	320	100.00
경북	265	1,515	17.49	498	575	86.61
경남	694	2,105	32.97	404	404	100.00
제주	163	829	19.66	46	46	100.00

지표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항목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지원받는 장애인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	장애인문화· 여가 활동지원 사업 비율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예산 총액 (광역)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
산식 (단위)	E10 (대)	E11 (대)	=E10/E11*100(%)	E12(원)	E13(명)	= E12/E13(원)
서울	84,543	9,262	912.79	8,309,000,000	174,738	47,551
부산	46,415	5,034	922.03	625,713,730	76,832	8,144
대구	33,610	3,726	902.04	380,521,340	59,918	6,351
인천	35,564	7,117	499.70	986,730,451	72,708	13,571
광주	18,837	4,345	433.53	445,347,000	36,014	12,366
대전	17,514	1,695	1,033.27	188,827,150	36,213	5,214
울산	9,012	1,455	619.38	324,113,000	26,083	12,426
세종	2,013	350	575.14	138,608,000	6,906	20,071
경기	108,101	27,487	393.28	992,315,000	292,388	3,394
강원	24,354	4,184	582.07	425,373,500	42,788	9,941
충북	21,794	5,117	425.91	444,316,000	45,424	9,782
충남	26,820	4,225	634.79	1,147,499,000	59,123	19,409
전북	37,659	41,602	90.52	520,907,000	54,169	9,616
전남	36,533	10,121	360.96	544,644,400	54,830	9,933
경북	42,573	10,945	388.97	1,154,342,950	73,279	15,753
경남	40,528	7,184	564.14	647,363,800	87,274	7,418
제주	7,627	6,617	115.26	410,904,000	18,114	22,684

6.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지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자격소지자 가점)							
	65세미만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 복지 전담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중 자격증 소지자 수	65세미만 등록장애인 1만명당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 중 자격증 소지자 수	65세미만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 확보 수준	65세미만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전담 및 전담공무원 확보 수준
산식 (단위)	F01(명)	F02(명)	F03(명)	$F04 = \frac{(F02 - F03) + (F03 * 2)}{F01 * 10,000}$ (명)	F05(명)	F06(명)	$F07 = \frac{(F05 - F06) + (F06 * 2)}{F01 * 10,000}$ (명)	F05+F07 (명)
서울	174,738	499	356	48.93	720	605	75.83	124.76
부산	76,832	178	144	41.91	289	252	70.41	112.32
대구	59,918	84	60	24.03	203	181	64.09	88.12
인천	72,708	109	104	29.30	271	226	68.36	97.65
광주	36,014	75	58	36.93	181	128	85.80	122.73
대전	36,213	78	64	39.21	138	95	64.34	103.55
울산	26,083	38	22	23.00	64	49	43.32	66.33
세종	6,906	11	8	27.51	22	20	60.82	88.33
경기	292,388	383	290	23.02	1,021	770	61.25	84.27
강원	42,788	218	199	97.46	248	218	108.91	206.37
충북	45,424	77	55	29.06	196	134	72.65	101.71
충남	59,123	110	79	31.97	279	231	86.26	118.23
전북	54,169	84	67	27.88	291	258	101.35	129.23
전남	54,830	96	91	34.11	395	358	137.33	171.44
경북	73,279	112	101	29.07	624	475	149.97	179.04
경남	87,274	151	124	31.51	423	321	85.25	116.76
제주	18,114	35	27	34.23	44	31	41.40	75.63

지표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항목	장애인 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 횟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	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장애인 위원 수	장애인 위원 비율	장애 관련 조례 건수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수	지자체별 평균 조례 수
산식 (단위)	F08(회)	F09(명)	F10(명)	=F10/F09 *100(%)	F11(건)	F12(개)	=F11/F12 (건)
서울	5	38	21	55.26	449	26	17.27
부산	76	203	43	21.18	97	17	5.71
대구	38	115	25	21.74	55	10	5.50
인천	36	134	33	24.63	86	11	7.82
광주	16	155	53	34.19	116	6	19.33
대전	77	144	36	25.00	109	6	18.17
울산	3	57	25	43.86	75	6	12.50
세종	1	21	10	47.62	20	1	20.00
경기	263	538	123	22.86	450	32	14.06
강원	64	305	93	30.49	174	19	9.16
충북	69	175	49	28.00	115	12	9.58
충남	35	153	39	25.49	102	16	6.38
전북	86	139	30	21.58	163	15	10.87
전남	1	25	8	32.00	243	23	10.57
경북	127	268	54	20.15	175	23	7.61
경남	79	298	85	28.52	134	19	7.05
제주	2	23	8	34.78	30	1	30.00

지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항목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시도 전체 인구	광역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액 (광역)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산식 (단위)	F13(명)	F14(명)	F15(원)	F16(원)	=F15/F13(원)	=(F15/F16) /(F13/ F14) *100(%)
서울	174,738	9,386,034	1,510,135,584,000	47,190,512,274,000	8,642	171.89
부산	76,832	3,293,362	567,415,427,000	17,882,027,133,000	7,385	136.01
대구	59,918	2,374,960	672,785,848,000	10,158,465,000,000	11,228	262.51
인천	72,708	2,997,410	394,867,394,000	10,042,510,849,000	5,431	162.10
광주	36,014	1,419,237	317,709,532,000	7,110,179,032,000	8,822	176.09
대전	36,213	1,446,216	335,137,815,000	6,561,725,000,000	9,255	203.97
울산	26,083	1,103,661	160,949,651,000	4,605,899,320,000	6,171	147.86
세종	6,906	392,311	47,894,463,000	1,595,902,586,000	6,935	170.48
경기	292,388	13,630,821	1,291,080,000,000	33,766,986,228,000	4,416	178.25
강원	42,788	1,527,807	188,346,685,000	7,523,209,036,000	4,402	89.39
충북	45,424	1,593,469	207,368,407,000	6,657,634,998,000	4,565	109.26
충남	59,123	2,130,119	262,789,426,000	8,204,500,000,000	4,445	115.40
전북	54,169	1,754,757	424,432,698,000	7,844,338,018,000	7,835	175.27
전남	54,830	1,804,217	277,780,670,000	10,338,111,480,000	5,066	88.42
경북	73,279	2,554,324	351,029,865,000	12,607,800,000,000	4,790	97.05
경남	87,274	3,251,158	413,653,842,000	10,734,119,584,000	4,740	143.56
제주	18,114	675,252	215,431,087,000	7,063,922,036,000	11,893	113.69

지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시도 전체 인구	광역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액 (광역)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구 대비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산식 (단위)	F13(명)	F14(명)	F15(원)	F16(원)	=F15/F13(원)	=(F15/F16)/(F1 3/ F14)*100(%)
서울	174,738	9,386,034	1,510,135,584,000	47,190,512,274,000	8,642	171.89
부산	76,832	3,293,362	567,415,427,000	17,882,027,133,000	7,385	136.01
대구	59,918	2,374,960	672,785,848,000	10,158,465,000,000	11,228	262.51
인천	72,708	2,997,410	394,867,394,000	10,042,510,849,000	5,431	162.10
광주	36,014	1,419,237	317,709,532,000	7,110,179,032,000	8,822	176.09
대전	36,213	1,446,216	335,137,815,000	6,561,725,000,000	9,255	203.97
울산	26,083	1,103,661	160,949,651,000	4,605,899,320,000	6,171	147.86
세종	6,906	392,311	47,894,463,000	1,595,902,586,000	6,935	170.48
경기	292,388	13,630,821	1,291,080,000,000	33,766,986,228,000	4,416	178.25
강원	42,788	1,527,807	188,346,685,000	7,523,209,036,000	4,402	89.39
충북	45,424	1,593,469	207,368,407,000	6,657,634,998,000	4,565	109.26
충남	59,123	2,130,119	262,789,426,000	8,204,500,000,000	4,445	115.40
전북	54,169	1,754,757	424,432,698,000	7,844,338,018,000	7,835	175.27
전남	54,830	1,804,217	277,780,670,000	10,338,111,480,000	5,066	88.42
경북	73,279	2,554,324	351,029,865,000	12,607,800,000,000	4,790	97.05
경남	87,274	3,251,158	413,653,842,000	10,734,119,584,000	4,740	143.56
제주	18,114	675,252	215,431,087,000	7,063,922,036,000	11,893	113.69

지표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항목	65세미만 등록 장애인 수*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총액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총액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액	65세미만 여성등록 장애인 수*	광역자치단체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총액	기초자치단체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총액	여성장애 인 1인당 장애인 여성장애 인지원 예산액
산식 (단위)	F16(명)	F17(원)	F18(원)	$=((F17+F16)+(F18/F16))/2(\text{원})$	F19(명)	F20(원)	F21(원)	$=((F20+F19)+(F21/F19))/2(\text{원})$
서울	174,738	382,133,883,109	9,444,103,010	2,240,944	58,826	2,113,512,000	5,165,592,084	123,740
부산	76,832	640,420,669	2,031,087,669	34,771	25,520	158,871,000	61,813,000	8,647
대구	59,918	9,048,556,000	831,630,000	164,895	19,744	460,747,000	124,000,000	29,616
인천	72,708	1,203,927,000	390,283,796	21,926	25,036	264,690,000	21,910,000	11,448
광주	36,014	943,700,000	879,705,000	50,630	12,449	354,156,000	35,000,000	31,260
대전	36,213	81,685,194,000	1,108,899,120	2,286,309	12,101	1,529,713,000	3,000,000	126,660
울산	26,083	36,573,681,000	568,144,000	1,423,986	8,391	321,871,000	110,744,000	51,557
세종	6,906	6,041,096,000	-	874,760	5,093	57,141,000	-	11,220
경기	292,388	6,374,125,000	20,441,667,514	91,713	93,117	397,269,000	65,535,000	4,970
강원	42,788	41,929,926,000	12,049,880,518	1,261,564	14,077	314,686,000	64,189,000	26,914
충북	45,424	1,303,921,000	4,563,154,395	129,162	14,974	140,283,000	762,423,440	60,285
충남	59,123	1,301,250,000	8,509,411,550	165,936	18,998	543,824,000	61,469,000	31,861
전북	54,169	300,000,000	3,745,138,080	74,676	18,257	227,671,000	216,781,000	24,344
전남	54,830	3,734,113,000	6,656,798,810	189,511	17,959	469,629,000	611,537,440	60,202
경북	73,279	4,370,166,000	27,499,557,800	434,909	23,646	216,150,000	706,587,000	39,023
경남	87,274	4,743,356,000	8,300,206,955	149,455	27,751	570,690,520	372,250,000	33,979
제주	18,114	18,433,857,000	1,732,323,000	1,113,292	6,191	288,636,270	77,000,000	59,059

부록 2. 2024년 전국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지표 설명 자료

2024년 조사지표는 17개 시도별로 교육과 복지의 두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여건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하여 총체적·집약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전체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구분	임기 1년(2023)	임기 2년(2024)	임기 3년(2025)	임기 3년(2026)
조사 방식	테마 분야 조사 (소득 및 이동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중간평가)	테마 분야 조사 (보건 및 서비스 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평가)

조사지표는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대분류에서 교육분야와 복지분야로 구성되었다. 교육분야는 ‘교육 영역 1개, 8개 지표로 구성되고,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8개,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7개, ‘복지 서비스 지원 영역’8개,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5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7개, 43개 지표로 구성된다. 분야 및 영역별 지표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 구성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 : 2개 분야 6개 영역 43개 지표 (23년 조사는 2개 분야 3개 영역 21개 지표)			
분야 및 영역			지표수
1. 교육분야	1-1. 교육영역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③ 특수학급 설치율 ④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⑥ 통합교육 학생비율 ⑦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	8
2. 복지분야	2-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③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8
	2-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7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 : 2개 분야 6개 영역 43개 지표 (23년 조사는 2개 분야 3개 영역 21개 지표)			
2. 복지분야	2-3.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②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④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8
	2-4. 이동(편의)-문화여가 정보접근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④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5
	2-5.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②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③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⑥ 장애인단체 수준 ⑦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7

* 2023년에 조사하지 않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분석함

1. 교육분야

교육분야의 조사는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교육 수준과 여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대비하여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분야 하위 9개 지표들은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③ 특수학급 설치율, ④ 특수교사 법적정원 충원율, ⑤ 특수학급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⑦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다.

1-1. 교육영역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지 표 명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예산 총액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특수교육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를 의미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산 출 방 법	시·도 특수교육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지 표 명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책정된 특수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시·도 특수교육 예산 /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 10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③ 특수학급 설치율

지 표 명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관내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일반학교 통합교육 실시 가능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전체 특수학급 수 / 일반학교 전체 학급수 × 10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교육통계연보

④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지 표 명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비례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법정정원에 따라 확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의 교원 배치가 필요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 4 × 100 (가중치의 33% 적용)
	초·중등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초·중등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6 × 100 (가중치의 33% 적용)
	고등학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7 × 100 (가중치의 33% 적용)
자 료 출 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연차보고서

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지 표 명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학업 및 학습상의 인적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보조인력의 확보가 필요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frac{\text{보조인력 수(유급과 무급 포함 전체)}}{\text{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times 100$ (가중치의 50% 적용) $\frac{\text{유급 보조인력 수}}{\text{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times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지 표 명	통합교육 학생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들 중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분리교육을 최소화한 통합교육의 실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frac{\text{(특수학급 학생 수 + 일반학급 장애학생 수)}}{\text{특수교육대상자 수}} \times 10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⑦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

지 표 명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특수학급 수(명)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급 학생 과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관내 전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한 학급수를 조사하여 학급 당 학습 인원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과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특수학급+특수학교) 학급 수 / (특수학급+특수학교) 학생 수 × 10
자 료 출 처	교육부 연차보고서,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 표 명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장애를 가진 교원의 비율을 조사하는 지표로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분야 고등 교육과 취업 진로 확대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원으로서 적합한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B 취학을 증가
산 출 방 법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2배수 고용제 적용) ※ 2배수 고용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2배수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름)
자 료 출 처	강경숙 국회의원실, 교육부 교원정책과

2. 복지분야

2-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 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한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8개 지표들은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③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다.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 표 명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니는 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민간 부문 의무고용 장애인(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민간부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적용대상인원×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 ※ 2배수 고용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2배수 인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름)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 료 출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 표 명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중 적용제외 공무원(소방직) 인원을 제외한 인원 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 공무원(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적용대상 공무원 수 ×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 ※ 2배수 고용제 적용 :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설명 참조 ※ 적용대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본청 및 기초자치단체; 구시군, 읍면동 포함)에서 적용제외 대상 공무원(소방직) 수를 제외 한 인원 ※ 계약직, 시간제 및 기간제 공무원 제외, 휴직 및 파견의 경우 지자체가 급여를 제공하는 인원 인정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 표 명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우선구매 공기업, 공공기관이 1년 간 구매한 총 물품 구매 금액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제도에 따라 구입한 장애인생산물 구매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물품 구매액 / 지자체 물품 총 구매액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물품 구매액 / 우선구매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총 구매액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 표 명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의 장애아동 수당 지급 장애아동(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 수에 대비한 장애아동 수당(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지급액,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급액 포함)의 지급 총액을 조사하여 지급 장애아동 1인당 연 평균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A 극심한 빈곤해소 및 4.B 사회보호 수혜 확대,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산 출 방 법	장애아동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아동수당 전체지급자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 표 명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의 장애인 연금 및 경증 장애수당 지급자(산정기준에 의함) 수에 대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연금지급액, 경증 장애수당,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 수당 지급액 포함)의 지급 총액을 조사하여 지급자1인당 연 평균 지급 금액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A 극심한 빈곤해소 및 4.B 사회보호 수혜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지급총액 / 장애수당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연인원 기준
	장애인연금·부가급여(중증장애인) 지급총액 / 장애인연금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연인원 기준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 표 명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국민기초수급대상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자립자금(보건복지부) 대여 이용 실적의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과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A 극심한 빈곤해소 및 4.B 사회보호 수혜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장애인 수+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100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자료,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 표 명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데 지원된 예산의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총 집행 금액 /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지 표 명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 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인원의 비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이용자 수(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제외) / 근로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100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2-2.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으로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 기기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한다.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7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④ 여성 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의료비(국비 및 사·도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포함) 지원 예산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급자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의료비 평균액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으로 접근 향상
산 출 방 법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국고+사·도 자체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 사·도 자체사업은 의료급여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약제비(비급여, 입원식대 등)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자체 사업(예, 저소득장애인 의료 지원 등), 지역재활병원(장애인·장애아동 전문병원) 건립·운영 예산총액을 폭 넓게 인정함(사업실적 및 예산 자료 제출 필요)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지표 정의	②-1.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에 대비한 보조기기 지급 총 건수(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원 건수 및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급 건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급자 1인당 교부된 보조기기 평균 건수를 조사 ②-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수에 대비한 보조기기 지급 예산 총액(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예산 총액 및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급 예산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수급자 1인당 보조기기 지급 예산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과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D 보조기구 보급 확대와 4.C 자립생활 지원 강화
산 출 방 법	②-1.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 보조기기 교부 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 × 100 (가중치의 5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②-2.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총액 + 보조기기 교부 예산 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에 대비한 실제 수검비율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으로 접근 향상
산 출 방 법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 100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지표 정의	④-1.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 지원 실인원 수에 대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총 일수를 조사 ④-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 지원 실인원 수에 대비한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예산 총액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생명권,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으로 접근 향상, 6.C 장애여성 성, 여성 보건 서비스 접근 보장
산 출 방 법	④-1. 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가중치의 50% 반영) ※ 삼태아 포함 ④-2.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 총액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가중치의 5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자료

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 정의	<p>⑤-1, ⑤-3.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 인원 중 실제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실인원의 비율</p> <p>⑤-2, ⑤-4. 이용 대상 인원에 대비한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예산 총액을 파악한 대상자 1인당 평균 활동지원 예산액 지급 수준을 함께 조사</p>
지표의 의의	<p>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C 자립생활 지원 강화</p>
산 출 방 법	<p>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100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비율 (%) (가중치의 40% 반영)</p>
	<p>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1인당 평균 급여량 (원) (가중치의 4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p>
	<p>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100 =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비율 (%) (가중치의 10% 반영)</p>
	<p>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수 =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대상인원 1인당 평균 급여량 (원) (가중치의 10% 반영)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p>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에 대비한 실제 수검비율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 출 방 법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 100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에 대비한 실제 수검비율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건강,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 출 방 법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 100
자 료 출 처	보건복지부

2-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8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②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충 수준,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⑦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다.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I (장애인복지관)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으로 접근 향상
산 출 방 법	장애인복지관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②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충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대상 연령의 중증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직업재활시설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5천 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 출 방 법	직업재활시설 수 / 18세 이상 5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5,000(취업연령대 성인장애인 5천명 당 직업재활시설 수)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지역사회재활시설Ⅱ (장애인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한 법정 재활시설 및 기타 장애인 이용시설)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Ⅱ의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 기타 장애인이용기관 (①,②,④를 제외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하여 대규모 거주시설이 아닌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 당 대안적 거주시설의 설치율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 (장애인 1만명당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수)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애인 1만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사·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 기타 장애인이용기관 (①,②,④를 제외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황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에 대비한 직업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근로 연령 대상층 장애인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7조 근로 및 고용,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선언 1.B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산출 방법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훈련장애인+근로장애인) 수 × 10 (이용장애인 10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황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역사회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용 장애인 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를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할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산출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수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수 × 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0명 당 종사자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산출 방법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2-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축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인프라와 문화, 체육, 여가활동, 정보 접근 지원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5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④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이다.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지 표 명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의무 수준에 대비한 실제 특별운송수단(대안적 방법을 포함) 확보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B 대중교통 접근성
산 출 방 법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 전담, 장애비장애 공용),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 /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 × 100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②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 표 명	저상버스 확보 수준(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역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조사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B 대중교통 접근성
산 출 방 법	저상버스 (※중저상버스 제외) 보급 대수 / 전체 등록 시내버스 대수 × 100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 자료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 표 명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의 공공기관 건축물 중 배리어프리 인증(본인증에 한함)을 받은 누적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 개인의 이동,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A 공공 물리적 환경 접근성
산 출 방 법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받은 시설 수(누적수) / 전체 지자체기관 수 × 100 ※ 지자체기관 수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위탁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기관 등은 제외)
자 료 출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출자료

④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율

지 표 명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저소득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 장애인 연인원을 조사하여 장애인 문화·체육·여가활동 지원사업 참여 비율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산 출 방 법	문화·여가활동바우처(문화바우처+스포츠(관람)바우처+여행바우처)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100
자 료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

지 표 명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원)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 관련 지원 예산 총액을 조사하여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정보통신 접근 지원 예산액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3.C 정보 및 의사소통 접근성 〈예시〉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 장애인의 정보 및 매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포함. 단, 통신요금,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과 관련 기관 운영비 지원은 제외
산 출 방 법	광역시자치단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총액 / 65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광역예산만 해당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2-5. 복지행정 및 예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 행정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조직과 인력 등의 인프라와 예산의 구성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7개 지표들은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수준, ②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③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④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수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⑦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이다.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수를 조사하여 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배치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산 출 방 법	①-1.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포함),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가중치의 50% 적용)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장애인복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자격증 소지 :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수어통역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종사하는 전문분야 자격(편의시설 담당자의 건축사 자격 등)에 한함
	①-2.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수(광역+기초(읍·면·동 포함),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가중치의 50% 적용)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장애인복지 외 업무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②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해당 위원회(종합적인 정책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한함) 개최 건수와 전체 구성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 위원의 포함 비율을 조사하여 산출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근거하여 조례에 의해 설치·구성된 위원회로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계획) 또는 예산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한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2.A 정부 의결기구 장애인 참여 확대, 2.B 정치참여 편의제공
산출 방법	②-1. 장애인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 횟수(건) (가중치의 50% 적용)
	②-2. 장애인 관련 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 =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건/명) (가중치의 50% 적용)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제출자료

③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총 수에 대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련 조례의 총수(시행령, 시행규칙 제외)를 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조례 제정 수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2.A 정부 의결기구 장애인 참여 확대, 2.B 정치참여 편의제공
산출 방법	장애관련 조례 수(광역+기초) / 지방자치단체 수 (광역+기초) -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조례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한 경우 조례 수에 편입하지 않음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법제처사이트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 정의	④-1.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한 장애인 복지 예산 총액을 조사하여 장애인 1인당 평균 장애인복지 예산액을 산출 ④-2.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 중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에 대비한 2023년 전체 광역자치단체 예산 총액 중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 예산액이란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을 의미함 (추후 동일)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산출 방법	④-1.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적용) ④-2.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 예산총액 / (지방자치단체 65세 미만 등록장애인구 /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 ×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https://lofin.mois.go.kr)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의 2016년 장애인복지 예산 총액 중 국비 지원 예산을 제외한 시·도비 자체 예산의 규모를 조사하여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 ※ 예산액이란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을 의미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산출 방법	⑤-1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예산을 제외한 시·도비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가중치의 50% 적용) ⑤-2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와 시·도비예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비 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가중치의 50% 적용)
자료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및 기초)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예산액을 조사하여 65세 미만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예산액 수준을 파악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2.A 정부 의결기구 장애인 참여 확대, 2.B 정치참여 편의제공
산 출 방 법	⑥-1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가중치의 50% 적용) (주1) 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⑥-2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순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가중치의 50% 적용) (주2) 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⑦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지표 정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및 기초)의 여성 등록장애인 인원수에 대비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총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여성 장애인 1인당 평균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예산액 수준을 조사 ※ 예산액이란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을 의미함
지표의 의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생명권,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23조 가정과 가족 존중, 아태장애인10년 인천선언 4.A 재활 및 보건의료 접근 향상, 6.A 장애여성 개발기회 동등 접근, 6.B 장애여성 정부의회 기구 참여 보장, 6.C 장애여성 성, 여성 보건 서비스 접근 보장, 6.D 장애여성 폭력 학대 보호 조치
산 출 방 법	⑦-1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적용)
	⑦-2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가중치의 50% 적용)
자 료 출 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발행일 : 2024년 11월 00일 발행

발행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팩스 : 02-783-0069

이메일 : mail@kodaf.kr

편집·인쇄 : 블루애드 02) 6082-7076

ISBN 978-89-5983-348-1